



손해보험의 이해 (16): 정책성보험 - 농작물재해보험

김동겸 선임연구원

■ 농작물재해보험(Crop Insurance)이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임.¹⁾

-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안정적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됨.²⁾
 -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(산림작물 포함) 및 농업용 시설(임업용 시설물 포함)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■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성보험, 물적손해보험, 단기·소멸성 보험이라는 특징을 보임.

-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보험을 정책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해 보면,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운영주체인 정책보험임.
 -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민영보험과 달리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워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.³⁾
-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해 보상하는 물적손해보험이며, 보험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며, 만기 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 단기소멸성보험임.

■ 2012년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농작물로는 본사업 16개 품목, 시범사업 24개 품목 등 총 35개이며, 대상지역은 본사업과 시범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.⁴⁾

1) 농작물재해보험의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(보험가입자), 제8조(보험사업자), 제19조(재정지원), 제20조(재보험사업)를 들 수 있음.
2) 최근 3년 동안 재해보험가입률(=보험가입면적/대상면적×100) 추이를 보면, 36.0%(2010년), 40.2%(2011년), 45.1%(2012년)로 증가하고 있음.
3) 농가의 보험수요는 낮은 반면 공급자인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비용이 확보될 때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, 국가가 농가의 부담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에게는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작물보험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게 됨.

- 시범사업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며, 본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거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
-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대상 재해 범위를 기준으로 특정위험방식과 종합위험방식으로 구분하며, 대상 재해의 구분에 따라 보장수준(또는 인수범위)에서 차이를 보임.
 - 특정위험방식의 경우 해당 품목에 가장 위험한 몇 가지 재해를 주 대상으로 하는 반면, 종합위험방식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함.
 - 한편, 특정위험방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0%, 80%, 85%를 보장하며,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0%를 보장함.
 - 즉, 70%형은 수확량이 평년 생산량의 70%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, 그 차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, 30%는 농가가 부담함.⁵⁾
-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에 충당되는 부분인 순보험료⁶⁾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인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, 이 중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
 - 국가에서 운영비(부가보험료)의 100%, 농가부담 순보험료의 50%를 부담하고 있으며,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⁷⁾의 경우 100%를 보조하고 있음.
-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, 농협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원수보험사로 참여하고, 민영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로 참여하고 있음.
 - 농작물재해보험은 NH생명·화재를 주관사로 하여 삼성화재, 현대해상, 동부화재, LIG손해보험, 메리츠화재, 코리안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.
 - 손해를 180% 이하의 통상적인 손실은 보험사업자인 농협과 민영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나, 손해를 180% 이상의 거대 대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 **kiri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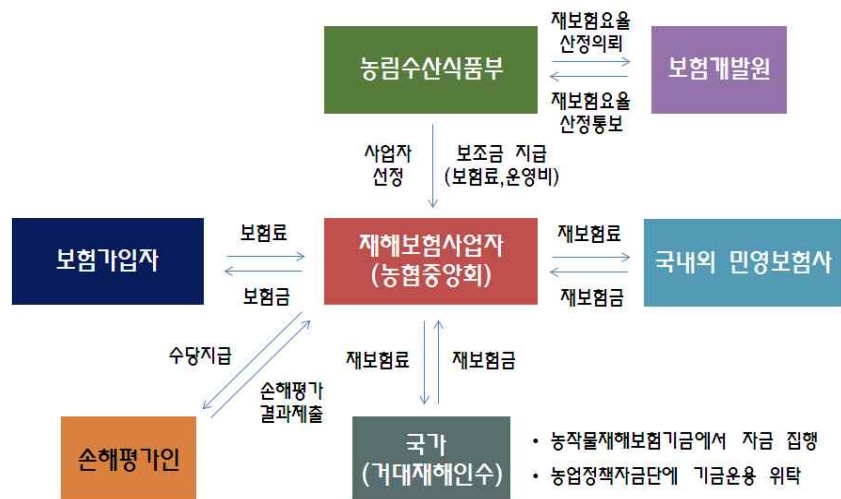
4) 본사업 품목으로는 사과, 배, 단감, 감귤, 뽕은감, 참다래, 자두, 밤, 콩, 감자, 양파, 버, 고구마, 옥수수, 마늘, 매실 등 총 16개 품목이 있으며, 시범사업 품목으로는 고추, 복숭아, 포도, 대추, 수박, 딸기, 오이, 토마토, 참외, 복분자, 풋고추, 호박, 국화, 장미, 인삼, 오디, 차, 파프리카, 멜론, 느타리버섯, 표고버섯, 상추, 부추, 시금치 등 총 24개 품목이 있음.

5) 보험가입금액의 30%, 20%, 15%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,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.

6)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일컫음.

7)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기 위한 통계자료 축적,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 보험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을 의미함.

〈그림 1〉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운영체계



자료: 농림수산물식품부(2013), 2013년도 농어업재해보험(농작물재해보험) 사업시행지침.